

## 제 안 설 명 서

【영주시화장장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(안)】

영 주 시

## 영주시화장장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(안)

의안	
번호	245

제출년월일 : 2005. 11.  
제출자 : 영주시장

### 1. 제안이유

화장장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 
법인 또는 단체, 개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영주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 
관리조례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내용

- 영주시화장장의 민간위탁 운영

### 3. 영주시화장장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(안)

### 4. 참고자료

- 관련법령(발췌) 1부.
- 영주시화장장 현황 1부.

## 영주시화장장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(안)

### 【위탁취지】

영주시화장장을 운영하는데 있어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을 갖추고 이용시민에게 질적인 화장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전한 사업자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함.

### 【시설현황】

(단위 : m<sup>2</sup>)

구분	토 지					건 물				
	지번	지목	지적	용도	소유자	층별	구조	면적	용도	소유자
부동산	산14	임야	1,450	화장장	영주시	1층	RC	145.35	화장장	영주시

※ 건물(실제위치는 산15-1번지 내)

### 【위탁기간】

- 위탁기간 : 3년

### 【위탁내용】

- 영주시화장장 시설물 관리
- 영주시화장장 운영에 관한 사항
- 기타 화장장 관련 필요한 사항

## 영주시화장장 위탁운영자 모집계획(안)

### 【시설현황】

(단위 : m<sup>2</sup>)

구분	토 지					건 물				
	지번	지목	지적	용도	소유자	층별	구조	면적	용도	소유자
부동산	산14	임야	1,450	화장장	영주시	1층	RC	145.35	화장장	영주시

※ 건물(실제위치는 산15-1번지 내)

### 【위탁근거】

- 영주시화장장 관리 및 운영조례 제10조 제1항
- 영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

### 【모집방법】

- 공개모집(영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6조)

### 【신청자격】

- 수탁자는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영주시화장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, 단체 또는 개인
  - 영주시화장장 관리 및 운영조례 제10조 제1항

### 【선정방법】

- 영주시민간위탁운영자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

### 【위탁방법】

- 위탁계약기간,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, 수탁자의 의무 등 구체적인 관리·운영에 관한 내용을 협약에 의하여 위탁함.

## 【추진일정】

일 정	추 진 내 용	비 고
2005. 12월 회기종	의회 동의	
2006. 1월 중	적격심사위원회 구성(9명)	
2006. 1월 중	공고문(안), 적격심사표(안) 성안	
2006. 1월 중	제1차 위원회(공고문 심사표 확정)	
2006. 2월 중	공고(12일간)	- 시보 및 영주시홈페이지 - 웹·면·동 게시판
2006. 2월 중	신청자 접수(6일간)	- 사회복지과(가정복지계)
2006. 2월 중	제2차 위원회(심사 선정)	- 심사결과 최고점수를 많이 받은 위원수가 많은 신청자
2006. 2월 중	선정 공고	- 개별통보 - 시보 및 영주시홈페이지

## 【소요예산】

(단위 : 천원)

구 분	현 행 (2005년)		위 탁	증 감	비 고
계	90,589		102,569	11,980	
인 건 비	계	29,161	29,188	27	
	· 상근	21,215			
	· 보조	7,946			
경 상 비	계	46,428	43,381	△3,047	
	· 공 공요금	5,400			
	· 연 료 비	37,008			
	· 유 지 비	4,020			
시 설 비	· 화장로 보수 15,000		30,000	15,000	
기 타					

영주시화장장 민간위탁운영 신청서				
신청인 (대표자)	성명		주민등록번호	
	주소		전화번호	
법인	명칭			
	소재지			
단체	설립목적			
	법인번호			
자체부담능력	위탁운영시 자체부담			비고
	현금출연	기타		
<p>영주시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「영주시화장장」 관리·운영에 대하여 “영주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”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</p>				
200 년 월 일				
신청자(법인) : (인)				
영주시장 귀하				
<b>* 구비서류</b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업계획서 및 요약서(인력, 기구, 시설, 자부담계획, 운영방안 등)</li> <li>법인설립허가증,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, 법인임원현황, 법인정관, 이사회의결서 각 1부.</li> <li>최근 3년간 재무제표 증명서 1부.</li> <li>법인의 재산목록 및 그 재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</li> <li>개인의 경우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, 최근3년간 연말잔고증명서, 재산세 및 소득세 납부자료 각 1부.</li> <li>공고일 이후 발행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.</li> <li>기타 위탁운영 참고자료(사업계획 실현가능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)</li> </ol>				

## 영주시화장장 민간위탁운영 수탁신청서 접수부(안)

등록 번호	접수일자	수 탁 신청자명	주 소	접수자	서명	비고
1						
2						
3						
4						
5						
6						
7						
8						
9						
10						
11						
12						
13						
14						
15						

## 『영주시화장장』

### 민간위탁운영자격격심사위원회 구성계획(안)

#### 【목 적】

- 영주시화장장 민간위탁운영자 선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「영주시화장장」 민간위탁운영자격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.

#### 【위탁근거】

- 영주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

#### 【구성인원】

- 심사위원 : 9명(위원장 : 부시장)

구 분	심사위원 구성 현황							
	계	공무원	시의원	대학교수	언론인	사회복지 시설장	회계사	기타
영주시	9	2	2	1	1	2	1	

\* 공무원 2명(부시장, 행정지원국장), 간사(가정복지담당)

#### 【위촉방법 및 위촉기간】

- 각 기관에서 추천된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
- 수탁운영자의 심사·선정 완료시 까지

#### 【선정기준】

- 신청인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심사 및 자본력 등으로 배점표를 작성
- 제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·선정

- 】
- 제1차 위원회(2005. 1월중 예정)
    - 민간위탁운영자 공개모집 공고문 토의 확정
    - 민간위탁운영자적격심사표 토의 확정
  - ※ 공고문(안) 및 적격심사표(안) 시에서 성안하여 상정
  - 제2차 위원회(2005. 2월중 예정)
    - 위탁운영 신청자 제안설명
    - 민간위탁운영자 적격심사
    - 민간위탁자 심의 확정

## 민간위탁 관련 법령

### 【영주시화장장 관리 및 운영조례】

제10조(위탁운영) ①화장장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.<신설 2005.8.8>  
②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.<신설 2005.8.8>

### 【영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】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①시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영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제6조(수탁기관 선정)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

## 영주시화장장 관리 및 운영조례

&[1995.01.09 조례 제0063호]

개정 1997.12.08 조례 제0236호

개정 2003.11.17 조례 제0454호

개정 2005.08.08 조례 제0527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영주시 화장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03.11.17>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화장 : 시체를 불에 태워서 분골로 처리함을 말한다.
2. 화장장 : 화장장과 그 부속시설 모두를 말한다.
3. 화장장의 이용 : 화장장에 의뢰하여 시체를 화장하거나 화장장의 부속시설을 사용함을 말한다.

제3조(위치) 화장장은 영주시 고현동 산14번지에 둔다.<개정 2003.11.17>

제4조(사용자) 시민은 누구든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장장을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시민의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시장은 시민이 아닌자에 대하여도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제5조(사용신청) 화장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1. 사용일시
2. 화장할 시체의 종별 및 구수
3. 부속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명과 사용내용

제6조(사용료) 화장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[별표]의 사용료에 상당하는 영주시수 입증지를 화장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.

제7조(사용료의 면제)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  
<개정 2003.11.17>

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<개정 2005.8.8>
  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
  3. 기타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<개정 2005.8.8>
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03.11.17>

제8조(시체의 접수기간) 화장할 시체는 매일 09시부터 20시까지 접수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절에 따라 접수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급히 화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접수시간 외에도 접수한다.

제9조(사무조직) 화장장의 사무조직에 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0조(위탁운영) ①화장장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.<신설 2005.8.8>

②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<신설 2005.8.8>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자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는 제6조에서 정한 사용료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.<신설 2005.8.8>

제11조(위탁계약)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목적, 위탁기간,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 상 필요 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, 시설의 보호와 기타 적 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불일 수 있다.<신설 2005.8.8>

제12조(운영경비) ①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.<신설 2005.8.8>  
②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예산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, 예산집행은 「영주시재무회계규칙」을 준용한다.<신설 2005.8.8>

제13조(수탁자의 의무) ①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관계법령에 의한 규정이나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 여야 한다.<신설 2005.8.8>  
②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임의로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.<신설 2005.8.8>  
③수탁자는 제12조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.<신설 2005.8.8>

제14조(지도·감독) ①시장은 수탁자의 위탁운영 사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연1회 청기점검과 필요시 수시 지도·점검하게 할 수 있다.<신설 2005.8.8>  
②지도·점검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탁자는 위탁업무의 운영사항에 관한 장부·서류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.<신설 2005.8.8>

제15조(위탁계약 해지 등)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계약기간의 만료와 관계없이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.<신설 2005.8.8>  
1. 수탁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<신설 2005.8.8>  
2.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<신설 2005.8.8>  
3.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본래 가능을 상실한 때<신설 2005.8.8>  
4.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<신설 2005.8.8>  
②제1항의 사유로 위탁해지될 경우 시장은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<신설 2005.8.8>

제16조(손해배상 등)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화장장 시설을 멸실 또는 폐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,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 <신설 2005.8.8>

제17조(준용규정) 화장장 시설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영주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<신설 2005.8.8>

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개정 2005.8.8>

부 칙(1995.01.09 조례제0063호)  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97.12.08 조례제0236호)  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 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부 칙(2003.11.17 조례제0454호)  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 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별지 (별표)

【별표】 화장료

【별표】&lt;개정 '97.12.8&gt;

## 1. 화장료

(단위 : 원)

종 별	기 준	요 액	
		관내거주자	관외거주자
1. 15세이상의 일반사체	1 구당	20,000	40,000
2. 15세미만의 일반사체	1 구당	10,000	20,000
3. 개장유꼴	1 구당	10,000	20,000
4. 사산물	1 구당	10,000	20,000
5. 적출물	1 kg당	3,000	6,000
6. 우마	1 두당	25,000	50,000

## 민간위탁 관련법령

### 【영주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】

&[1999.11.25 조례 제0314호]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(이하 "산하기관"이라 한다)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,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민간위탁"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2. "수탁기관"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·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.

**제3조(적용범위)**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**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**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 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
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영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**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)**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, 재정적인 부담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의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수탁기관 선정)**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

②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,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.

**제7조(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)** ①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영주시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두되, 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분야별 성격에 따라 수시로 구성하고, 수탁기관의 심사·선정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 다만,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당해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③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민간위탁 대상업무담당 주사가 된다.

**제8조(수탁사무의 처리)** 수탁기관은 수탁사무 처리에 있어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)** ①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.

②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.

**제10조(협약체결등)** ①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.

②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, 위탁내용, 위탁기간,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**제11조(지휘·감독)**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·감독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.

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,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**제12조(사무편람)**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·처리기간·처리절차·처리기준·구비서류·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**제13조(처리상황의 감사)**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.

**제14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 칙 (1999.11.25 조례 제0314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 제3항의 규정은 200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영주시화장장 현황

### □ 일반현황

○ 소재지 : 영주시 고현동 산14번지

○ 설치년도 : 1972. 5. 15

#### ○ 시설현황

- 부지 : 1,450m<sup>2</sup> (240,793m<sup>2</sup>중)

- 건물

구분	건축년도	규모(m <sup>2</sup> )	주요시설	비고
화장장	1972년	106.95	기계실, 분향실	분향실을 유족대기실로 사용
관리실	1974년	38.40	방 2실, 부엌	관리인(일용직) 상주

※ 주요설비 : 화장로 2기, 유골분쇄기 1기

#### ○ 화장로 교체

- 1972년 : 2기(재래식 화장로, 세화산업)
- 1992년 : 2기(무연무취 화장로, 세화산업)
- 2000년 : 1기(무연무취 화장로, 한국주포)

### □ 운영현황

#### ○ 직원배치(고정1, 보조1)

구분	성명	생년월일	최초임용일	고용일수	1일단가	예산액
일용인부	김정식	'44. 7. 15	'99. 1. 25	365일	32,300원	21,215천원

※ 보조인부 : 1인(150일 - 1일단가 32,300원, 예산액 7,946천원)

#### ○ 화장장 사용료 현황

(단위 : 원)

구분	15세이상	15세미만	개장유골	사산물	적출물	우마	비고
우리시민	20,000	10,000	10,000	10,000	3,000	25,000	
타시군민	40,000	20,000	20,000	20,000	6,000	50,000	

○ 화장장 관리운영 수지현황

(단위 : 건, 천 원)

구 분		2002년도	2003년도	2004년도	비 고
사용료 장 수	건 수	516	394	552	사체, 개장유골
	금 액	13,150	7,810	10,340	
관 리 운 영 비		52,366	77,847	93,998	
수 지 현 황		△39,216	△70,037	△83,658	

□ 문제점

- 화장장 부지 및 건물 협소에 따른 유족편의시설 부족
- 진입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많아 사고의 위험 상존
- 부지가 공유지분(7명)으로서 이해관계 문제발생 및 인근 토지경작자, 주민 등 화장장시설 확충과 개선에 낌비현상으로 추진이 어려움.

□ 개선사항

- 화장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양질의 화장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어 문제해결과 주민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본력과 전문성을 갖춘자에게 위탁운영이 필요함.